

학교생활인권규정

2009년 4월 1일 제정
2010년 4월 17일 개정
2010년 12월 17일 개정
2011년 7월 1일 개정
2012년 9월 25일 개정
2013년 4월 18일 개정
2013년 11월 18일 개정
2015년 7월 23일 개정
2016년 5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근거) 본 규정은 본교 학칙 제30조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 사항과 관련된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10.05)를 적용한다.

제3조 (목적) ① 이 생활규정은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학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교육지도방법 학생징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교육지도방법 관행을 개선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한다.
③ 학생 중심의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 정착함으로써 “오고 싶은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

제4조 (학생선도위원회 구성) 학교장은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교감
2. 부위원장 : 교무부장
3. 위원 : 학급 담임교사

4. 간사 : 생활지도 담당교사
5.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6. 전교 생활지도는 「생활지도부」를 활용한다.

제5조 (학생선도위원회 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생활지도
- ② 교육지도방법
- ③ 학생 자치활동
- ④ 기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학생 생활

제1절 학교생활

제6조 (기본이 바로선 어린이)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이 고의로 교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학부모가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

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1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실내화는 흰색의 끈이 없는 운동화 또는 미끄럽지 않고 먼지가 나지 않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실외에서는 실내화를 신지 않으며,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신지 않는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체육시간에는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는 간편복이나 체육복 종류의 옷을 착용한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2조 (두발)

- ①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의 개성에 따라 머리를 선택하되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13조 (청결 상태)

- ① 손톱과 발톱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② 의복은 항상 깨끗이 세탁 및 손질하여 착용한다.
- ③ 신체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④ 피어싱, 문신 등 신체 훼손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 (등교시 지참금지 소지품)

- ① 흉기 등 타인의 신체 및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 ② 오락기, 만화 등 수업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물건은 교육활동 시간 중 사용을 금한다.
- ③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제15조 (소지품 검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절 12조 ②항에 의거하여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보충수업)

특별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금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음란, 폭력, 오락 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4.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 (휴대폰 등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통신기기는 등교 후 전원을 끄고, 하교 시 켜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업 중에는 진동으로 설정한다. 이때 불가피한 경우는 가족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본인이 아파 급한 연락 등을 주고받아야 할 경우 등을 말한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 장 교육지도방법

제27조 (교육지도방법 규정) 학칙 제32조에 근거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방법을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학생 체벌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장, 교감이 함께한 자리에서 해당 학생에게 사과하고, 아동 이해를 돕는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제28조 (교육지도방법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교육지도방법을 부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로 한정한다.

1. 학교, 학년, 학급의 정해진 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하였으나 학급회의나 학생자치회의의 다모임 협의의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 학습태도 및 과제의 불성실, 태만으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

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이버상 포함)**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직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5. 남의 금품을 빼앗거나 훔친 사실이 명백함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6. 기타 교사가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제29조 (교육지도방법의 부과 절차) 부득이 교육지도방법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를 필히 거치도록 한다.

1. 학생에게 교육지도방법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2. 교육지도방법을 부과할 때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방법을 부과한 후에는 교육지도방법의 순기능을 살려 사후 생활 지도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제30조 (교육지도방법의 종류와 방법) 학칙 제32조에 근거한 교육지도방법의 종류와 방법은 선도위주 (훈계)로 하되 부득이 교육지도방법을 시행할 경우 ①을 우선 시행하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②를 시행한다. 단, 학부모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지도방법은 아래의 각호에서 경중을 가려 선택하여 시행한다.

1. 학교 환경 정화 활동 봉사
 2. 교재 교구 정비 봉사
 3. 시간은 교사 재량에 의함
 4. 일정한 벽면을 보고 서 있기(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10분 내외)
 5. 교육지도 기간 중 수양록을 제출하고 봉사활동을 실시
 6. 인성교육을 위한 과제 활동을 실시
- ② ①의 교육지도방법을 시행하였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각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학부모 면담
 2. 학부모와 함께 학교(급) 봉사활동 하기

3. 학교장 상담

③ ①, ②의 교육지도방법을 행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학생 자치법정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선도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1조 (교육지도방법의 제한 규정) ① 제30조 이외의 교육지도방법은 일체 부과할 수 없으며, 언어에 의한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② 교사가 규정에 벗어난 교육지도방법을 부과한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직접 교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시정되도록 하며, 그러한 사실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한다. 단,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한 다음 학생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32조 (교육지도방법에 따른 문제해결) 교육지도방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권고안에 따른다.

제 4 장 학생자치활동(어린이회)

제33조 (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4조 (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5조 (어린이회 임원) 학교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2. 임원(4~6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10명

제36조 (직무 및 선출)

1. 학교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7조 (부서) 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행사기획부 : 학·예술 활동 및 독서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예능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지도부 : 자기주도학습,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4. 사랑나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봉사,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제반 사항
5. 정보나눔부 : 정보, 시사, 과학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 (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1. 구성

- ① 회장, 부회장 및 3~6학년 각 학급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② 학생회 주도의 학교 행사 공모 및 실시
- ③ 학생 자치 동아리 결성 및 운영
- ④ 학생 자치 법정 운영
- ⑤ 전교어린이회 신문 발간
- ⑥ 생활도우미제도 운영
- ⑦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① 다모임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격주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③ 다모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4. 입후보자의 자격

- 가. **전교 회장**은 본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중에서 학급에서 추천 받은 학생이라야 한다.
- 나. 전교 **부회장**은 본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중에서 학급에서 추천 받은 학생이라야 한다.
- 다. 입후보하는 자는 **유권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한 학생이 동일 직위에 출마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동시에 추천할 수 없다.

5. 선거 참여 대상 : 본교 3, 4, 5, 6학년 학생 전원

6. 선거 관리 업무 종사자의 구성

- 가. 선거 관리 위원
- 1) 선거관리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참관은 교무, 생활지도 담당 교사와 4학년 이상 담임 교사로 한다.
 - 2) 학생 선거관리 위원은 3, 4, 5, 6학년 학급별로 1명씩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구성한다.
 - 3) 선거 관리 위원은 자기반 학생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지장)한 후 투표에 참여 하도록 한다.
 - 4) 불참 학생은 담임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사유를 적고 날인 후 제출한다.

7. 선거방법

- 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 나. 선거 홍보 활동은 후보자 등록 다음날부터 할 수 있으나 학교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다. 벽보는 3장만 제작하여 지정 장소에 부착 한다.(사전에 승인 후 부착)
- 벽보 크기 : 4절지 규격의 종이

8. 학생자치법정

- 가. 다모임에서 우리 학교의 명예 또는 전교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 문제가 됨이 의제로 건의되는 경우 전교어린이회 임원 1/20이상 이 의제로 심의할 것을 찬

성하거나 교육지도 방법 ①,②를 행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학생자치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나. 학생에게 징계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다. 학생자치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교어린이회장은 서면으로 담임 및 학생에게 알리고 학부모 확인을 받아오도록 한다.
- 라. 징계를 받은 학생은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 마. 징계 내용은 학교 또는 가정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9. 선거 일정 및 기타 사항은 별도의 학교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학생생활 지도

제39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방방,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생 생활 안전 지도를 위하여 어린이 명예 경찰, 생활도우미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2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7 장 개정 방법

제43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3명, 학생 3명, 학부모 2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출한다.

제44조 (개정방법) ① 규정 절차에 의한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안을 발의한다.

②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쟁점 사항은 학생, 보호자, 교원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시안을 작성하고 심의한다.

④ 제정·개정·폐지함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학생·보호자·교원 등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참여기회의 확대 및 준수 확보를 도모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⑥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⑦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한다.

⑧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자,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홍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장 학생선도규정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33조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의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원칙) 선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2절 학생선도위원회

제3조 (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학급담당교사를 위원으로 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간사로 하며, 특정 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학급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제4조 (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5조 (선도 심의)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9조에 따라 선도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도 처분의 종류와 기간) 선도처분의 종류에 따른 선도의 요건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회봉사 : 5 - 10일 기간으로 한다.

③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선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8조(선도의 방법) 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②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아침 수업 전이나 방과 후에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학습권 제한 금지)

③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사회 봉사를 실시할 경우 일반인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및 조치한다.)

제9조(선도 처분시 부과 내용) 선도 처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추수 지도 및 상담 치료

1.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2.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3.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4. 특별교육 이수는(대안 학교 등에서의 단기간 교육 이수)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선도 심의의 확정) 학생 선도처분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1조 (선도내용 통보) ①선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선도처분 결과는 공고하지 않는다.

③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제12조 (선도 집행 유보) 선도처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선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선도 처분완료 전이라도 개선되는 점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선도의 기준) 선도의 기준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15조 (재심의 절차) ①재심의 여부는 소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다.

②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한다.

③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④재심의 결과는 학교장이 결재하여 재공고 후 통보하고 선도를 시행한다.

제3절 개정방법

제16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